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MOU)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협약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 기관 간 장애인 고등교육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협약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장애인고등교육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 협력
2. 장애인고등교육 진로·취업지원 등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
3.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협력
4. 기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

제3조(협약조항)

협약 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협약 기관은 협력과 교류 시 각 기관의 규칙과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2. 협약 기관은 상호협력 및 교류에 필요한 자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별도 협의가 없을 경우 각자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제4조(비밀유지)

협약 기관은 협약의 체결 및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협약 기간 중이거나 협약 기간 완료 후이라도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효력발생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고,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협약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고,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협약의 변경·해지)

본 협약의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은 실무 논의를 통해 협약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기타)

협약 기관은 상호 간 신의와 성실로 협력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본 협약 사항의 이행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 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

2024. 8. 2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회장 박상규

박상규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원장 *이정현*